

납세자 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과 요인

A Test on the Factors and Inclination for Tax Evasion of Taxpayers

이 상 봉* · 문 영 배**

(Lee, Sang-Bong) · (Moon, Young-Bae)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설계와 가설의 검정
- IV. 결과분석
- V. 결 론

I. 서 론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조달 할 목적으로 납부에 대한 반대납부 없이 세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납부이다. 이러한 조세는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개별보상 없이 개인과 기업의 손에서 국가의 손으로 강제 이전되는 성질을 띠게 된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 제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조세의 이러한 특성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라는 의식보다는 납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바치는 또는 약탈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납세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거나 또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부정적인 의식구조, 세금을 내고 납는 것이 없다는 일반화된 인식, 급격한 경제발전에 의식구조의 개선이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윤리관의 왜곡 등 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조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될 수 있는 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거나 조세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다.

조세회피는 납세성실성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소득재분배와 자원배분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국가의 재정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즉 조세회피는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에 대한 문제를 유발시켜 납세자 사이에 불공정한 조세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국가재정과 정책의 근본을 뒤흔드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수립이나 건전한 경제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조세회피의 원인과 동기 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연구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들은 국외에서 경제학적 이론을 이용한 연구, 사회심리학적인 연구 및 조세제도나 재정지출을 조세회피와 관련시킨 연구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를 기점으로 조세회피규모나 실태에 대한 연구와 그 원인규명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전태영 1990; 유시영 1992; 김진황 1993; 홍정화·김완희 1997; 이종환 2000; 박원일 2000; 윤말순 2001; 박춘래 2001 등).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조세 정책적으로 적절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조세회피 행위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복잡한 현상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유발한 원인이나 동기를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은 한 국가의 제도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는 조세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역적, 업종별, 규모별, 사업자별로 세분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져 이론적 기초를 튼튼히 다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일반납세자(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세윤리, 과세자료의 은폐 용의성 및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이 납세자특성별(성실·불성실납세자)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결과는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우리나라 조세풍토를 질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세정책의 수립이나 조세행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직접세이나 과세당국이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며 조세를 회피할 경우 적발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과생되는 악영향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는 조세회피에 대한 동기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2.1 조세회피의 의미와 특징

조세회피는 그 개념자체가 실정법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라마다 혹은 학자간의 견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조정환 1996). 미국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조세성실성을 “국세청의 개입 없이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조세성실성비율은 신고 납부된 세금총액을 감사에 의해 수정되어 납부할 세금총액으로 나누어 계산되며 비성실성의 비율을 1에서 조세성실성의 비율을 차감한 것(1-조세성실성비율)으로 계산되는데 조세성실성의 반대개념으로 절세, 탈세, 조세회피 등이 있다(최명근 1997).

절세(tax saving)는 「조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절세행위는 적법한 행위로서 모든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것을 뜻하며 가산세 부가와 같은 세법상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절세행위에 관한 위 정의를 볼 때 조세회피 행위와 구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우며, 실무상에도 그 구별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탈세(조세포탈 Tax evasion)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닉하는 행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이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또한 탈세에 대하여는 탈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와 형사벌인 자유형(징역) 또는 재산형인 벌금(조세법 처벌법 제9조)을 가하는 점에 있다.

조세회피는 그 수단이 법형식의 남용에 그치고 그 선택된 법형식이 사법상으로는 적법·유효한 행위이며 세법상 조세회피의 경우는 회피세액의 추징과 행정벌적 성격의 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뿐이고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절세행위와 조세포탈행위의 중간위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우택 등 1998).

첫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재정을 어렵게 한다. 국가재정수입의 주요 부분인 조세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재정 적자의 원인이 된다.

둘째, 지하경제를 번창시켜 정부의 세무행정조직 및 세제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크게 저하시킨다.

셋째,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켜 국민의 단결력을 저하시키고 소득분배 정책을 교란시킨다. 지하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과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차등을 초래하며, 차등적 조세부담은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에 위배되므로 사회 구성원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지하경제의 성장은 정부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압박을 가한다. 세제에서 누락되는 지하경제는 지상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 과중한 부담은 더 많은 경제활동을 지하경제활동으로 전환시키며 또한 이를 확대시킨다.

다섯째, 조세회피에 따른 지하경제의 존재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시킨다.

여섯째, 조세회피 내지 지하경제의 확대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잘 살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사회전반에 불신풍조를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세회피행위는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탈세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한다(조정환 1996). 또한 조세회피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그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 즉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의 비준수, 납세불성실, 절세, 탈세 등 모두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다(조현연, 이신남 2002).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의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로 정의하고 탈세와 절세가 모두 포함된 의미로 사용하였다.

2.2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납세자가 조세회피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는가, 그리고 그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방법이나 실험실연구 그리고 실제자료 분석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종환(1992)은 납세자를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서 납세자 유형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을 조사했다. 종속변인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였고, 독립변인은 세율, 세율구조, 적발확률, 가산세율, 재정불공정성이었다. 연구결과, 모든 납세자에게서 세율과 조세회피행위가 높은 상관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확률과 조세회피 행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반과세자에게서 조세회피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황(1993)은 우리나라의 상장중소기업(207개 업체)과 비상장기업(122개 업체)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납세풍도, 납세의식, 과세공평성, 재정공평성, 조세부담율, 제재정도, 행정능력, 세제복잡성, 매출액, 직종 등의 변수를 가지고 조세회피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매출액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수준이 낮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기업풍도가 중소기업의 납세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환(1996)은 국내의 상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회사의 경리 및 회계부서, 자금부 등의 과장급 이상을 상대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가능자료 82부를 사례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과세공평성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납세윤리, 조세부담감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 성향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세공평성과 동료집단의 조세회피가 납세윤리와 연관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일반납세자들에 대한 조세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납세윤리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박원일(2000)은 국내의 법인납세자와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이미 알려진 조세회피요인과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와 실제소득 및 신고행태 자료에 의한 연구방법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과 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세윤리,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및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변수로 나타났으나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소득이 높을 수록 조세회피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말순(2001)은 중소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마련에 기여하고자 실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유형)을 조사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중소기업의 특성별 조세회피요인 중요도 인식차이에 있어서 기업경영형태, 매출액 규모, 과세표준, 세무조사경험, 회계실무담당자 경력, 업종 등이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연과 이신남(2002)은 전공교수와 학생 그리고 회계사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세구조와 조세심리체계아래서의 조세회피성향을 연구하였다. 선정된 요인은 복잡성, 과

세당국의 규제, 세율, 준거집단, 조세윤리였으며 이들 요인 모두가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제도의 복잡성과 과세당국의 규제가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준거집단의 납세에 대한 성실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았다. 각 변수의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력은 조세제도의 복잡성, 규제, 준거집단의 납세의식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이 실제 조세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사연구에 의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조세회피요인을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표 1> 설문조사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요인

연구자	연령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득원천	직업	동료집단	조세윤리	공평성	복잡성	세무간섭	제재	적발확률	세율	기타요인
이종환(1992)													+	-	재정불공정, 가산세율
김진황(1993)							-	+	+	-		+		-	재정불공정, 정부신뢰도, 조세부담
조정환(1996)							-	+			-				조세부담
박원일(2000)				+				-				+			경영수지, 과세자료 노출
윤말순(2001)				-				+				-			조세제도, 조세심리, 사회문화, 조세부담
조현연·이신남(2002)								-		+		+		+	조세구조적요인, 조세심리적요인

(주) (+) : 조세순응정도와 양(+)의 상관관계, (-) : 조세순응정도와 음(-)의 상관관계.

(0) : 불확실함.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중요성은 연구자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도 있고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연령과 납세윤리, 과세 공평성에 대한 인식, 세율 등의 요인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는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비슷하게 나타내고 있다. 조세회피성향에 있어서는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는 증가하지만 과세가 공평하다고 생

각할 경우, 납세윤리가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 행위를 하지 않으며 동료집단의 납세풍도에 있어서는 동료집단에 조세회피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는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이 있었다.

첫째, 납세자의 행동은 복잡·미묘하며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납세자의 적발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납세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세회피기회는 납세자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넷째, 납세자의 준거집단의 납세의식수준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납세자의 조세윤리는 조세회피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자영업 납세자(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세회피성향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요인 중 조세윤리,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을 조세회피요인으로 선정하였다.

Ⅲ. 연구설계와 가설의 설정

3.1 연구설계

3.1.1 변수의 선정과 정의

1) 종속변수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조세회피에 대한 질문은 납세자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응답자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상태를 질문한다면 왜곡된 답변이 나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하에서 응답자의 기본적 성향에 기초한 판단을 요구한다면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선정된 종속변수는 조세회피성향이다.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은 개입사업자가 다양한 조세회피사례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말한다. 즉 응답자의 신뢰도를 고려하

여 직접적으로 조세회피사실을 질문하지 않고 어떤 상황 하에서 응답자의 기본적 성향에 기초한 판단을 요구하는 간접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사실대로 신고여부, 신고수준, 탈세에 대한 가능성 정도, 성실납부의지 등을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율, 납세종도, 정부의 신뢰도 등도 중요한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세윤리,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조세윤리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납세자의 행동에 대한 규범으로 기업주가 느끼는 사회의 전반적인 조세윤리에 대한 인식과 기업주가 지니는 도덕기준 또는 가치관을 나타낸다.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은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과세자료 은폐의 가능성이다. 즉 유통구조의 전근대성과 무자료거래, 업종의 난립으로 인한 변칙거래, 영세한 도·소매업체에서의 박리다매 형태로 인한 세금계산서 탈루와 카드결제 기피 등을 말한다.

소득수준은 사회경제적 변수의 일종으로써 조세회피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납세자의 시간가치의 척도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AGI(adjusted gross income)를 소득수준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도 AGI와 비슷한 개념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 소득수준의 척도로 사용되었다.

3) 납세자특성

납세자특성은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탈세 또는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는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당국의 분류를 참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가산세납부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성실·불성실납세자로 분류하였다. 즉 불성실납세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또는 탈세와 수정신고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물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납세환경에 의하면 수정신고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 추징여부나 가산세 부담여부에 의해 성실집단과 불성실집단으로 분류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가설의 설정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고 납세자 특성별로 비교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3.2.1. 조세윤리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조정환(1996)은 조세회피가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도덕수준이 높은 납세자까지도 조세회피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조세윤리수준 내지는 조세윤리의식이 높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성향이 낮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 조세윤리의식이 높은 납세자는 조세회피성향이 낮을 것이다.

3.2.2. 과세자료 은폐 가능성과 조세회피성향

업종에 따라서는 과세자료가 100%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비 노출이나 은폐 가능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설 2 : 과세자료의 은폐가 용이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다.

3.2.3. 소득수준과 조세회피성향

이론적 조세회피 분석모형에서는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회피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의 세율체계가 초과누진세율이므로 실제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효과가 증가하게 되어 고소득계층이 조세회피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설 3 :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다.

3.2.4 납세자특성과 조세회피성향

본 연구에서 불성실납세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또는 탈세와 수정신고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로 정의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납세환경에 의하면 수정신고나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 추징여부나 가산세 부담여부에 의해 성실집단과 불성실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신고소득의 탈루나 탈세의 징후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추징세액이나 가산세를 물지 않은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추정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러므로 가설4는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을 비교함으로써 집단분류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성실납세자집단의 조세회피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 4 : 성실·불성실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은 다를 것이다

성실납세자집단과 불성실납세자집단 사이에 조세회피성향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성실·불성실집단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종에 따라 무자료거래, 변칙거래, 카드결제기피 등으로 인한 과세자료를 노출하지 않거나 은폐 가능한 경우 조세회피성향이 성실·불성실납세자 집단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박원일(2000)의 연구에 의하면 성실·불성실납세자 집단간에는 고소득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측정치는 유의한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납세자집단의 조세회피성향이 불성실납세자집단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의 집단간에 고소득자의 조세회피성향을 비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라 그리고 납세자 집단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조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2 : 성실·불성실납세자의 조세윤리의식은 다를 것이다.

가설4-3 : 성실·불성실납세자집단간에 과세자료은폐성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4-4 : 성실·불성실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은 다를 것이다

3.3 표본의 선정과 설문조사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실증적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실험적 연구를 사용하였고, 김진황의 연구에서는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경영자들은 본인이 실제 조세부담을 하는 경우가 적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실제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영업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부가세납세자집단과 면세사업자집단을 중심으로 하였다.

3.3.1 표본의 선정

표본 대상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작성을 당부하는 한편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약속된 날짜에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표본집단을 자영업자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자영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타 납세자 집단에 비하여 조세회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3.3.2 설문지 설계 및 자료수집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선행연구의 설문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제에 적합하게 수정을 가한 후 설문지 개발의 일반적 기준에 유의하면서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의 타당성을 위해서 2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11개 항목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기록된 질문에 대하여 해당항목에 표시하도록 하는 한정식 설문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의 배포수와 수거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여 응답토록 하였으며, 총 200부를 배포하여 280을 회수하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편향성을 보인 16부를 제외한 16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표본의 특성을 보면 일반과세자 82부, 간이과세자 37부, 면세사업자 37부, 겸업자 8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분포는 40대가 4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 24.4%, 50대 20.7%의 순이며, 이들이 전체의 92.7%를 차지하였다. 신고소득수준은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가 60.4%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가 17.7%, 그리고 1,000만원 이하가 12.8%로 이들이 전체의 90.9%를 차지하였으며 성별구성은 남자가 58.5%이며 여자는 상대적으

로 조금 낮은 41.5%이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졸이상이 50%, 고졸이 36.9%로 전체의 89.6%를 차지하였다. 업종 종사 기간의 분포는 5년 이상 10년 이하가 29.9%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년 이상 15년 이하 26.2% 그리고 5년 이하가 24.4%로 이들이 전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2> 에 나타나 있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분 류	문 항 번 호	문 항 수
인구통계학적 문항	1-7	7
조세윤리	8-10	3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	11-17	7
조세회피성향	18-27	10
심리적 부담감	28-32	5
경영수지와 조세회피	33-35	3
과세자료 은폐와 조세회피	36-40	5
소득수준과 조세회피	41-43	3
행동적 조세회피	44-48	5
세금관련 문제점 순위	49	1
세무의식 조사	50-53	4
계		53

IV. 결과분석

4.1 신뢰성 및 타당도분석

구인타당도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를 부여한 후 측정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검정하

는 방법이기에 때문에(성태제1995) 본 연구에서는 구인타당도분석과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측정하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조세회피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5문항이며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6936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정에서는 어느 설문항목을 제거하더라도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아 5문항을 조세회피성향의 측정치로 사용한다. 일반적 사회과학 데이터의 경우 보통 0.6이상이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윤리를 측정하기 위한 7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하나 결과 5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신뢰도 알파계수는 0.4943이었다. 신뢰도 검정에서 어느 설문항목을 제거시키더라도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았다.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일반적인 사회과학 기준인 0.6보다 적으나 설문항목이 적은 경우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다소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성태제 1995).

과세자료의 노출에 관한 5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문항이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Cronbach 알파계수는 0.51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어느 문항을 제거하더라도 신뢰도는 향상되지 않아서 4문항 모두 과세자료 노출의 측정치로 선택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납부의 비례성에 관한 3개의 설문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문항이 동일 요인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369로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3> 신뢰도 검정의 요약

	설문	제거	분석	Cronbach α
조세회피성향	10문항	5문항	5문항	0.6936
조세윤리	7	2	5	0.4943
과세자료노출	5	1	4	0.5180
소득수준	3	0	3	0.369

4.2 가설검정과 결과해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조세윤리, 과세자료은폐용이성, 소득수준 등의 변수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간의 상호 관련성만을 나타낼 뿐 어떠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 다변량 분석기법 중의 하나인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서 조세윤리, 과세자료은폐용이성, 소득수준 등의 변수가 조세회피성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4.2.1 상관관계분석

먼저 조세윤리,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 등의 변수가 조세회피성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조세윤리는 -0.220, 자료은폐용이성은 0.240, 소득수준은 -0.211로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세윤리의식과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그리고 소득수준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윤리의식이 낮은 납세자일수록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과세관련 자료의 은폐가 용이할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상관관계분석

	조세성향	조세윤리	자료노출	소득수준
조세성향	1.000			
조세윤리 유의확률(양쪽)	-.220 * * .005			
자료노출 유의확률(양쪽)	.240 * * .002	-.122 .118		
소득수준 유의확률(양쪽)	-.211 * * .007	.187 * .017	-.256 * * .001	1.000

4.2.2 다중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세윤리의식, 심리적 부담감, 경영수지,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의식을 독립변수로 두고 조세회피성향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식

은 다음과 같다.

$$TA = \alpha + \beta_1 TE + \beta_4 OPEN + \beta_5 INC$$

TA : 조세회피성향

TE : 조세윤리

OPEN : 과세자료의 은폐

INC : 소득수준

<표 5> 모형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327	.107	.090	.6744

<표 6> 분산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선형회귀분석	8.678	3	2.893	6.359	.000
	잔차	72.322	159	.455		
	합계	81.000	162			

<표 7> 계수

$$TA = \alpha + \beta_1 TE + \beta_2 OPEN + \beta_3 INC$$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에 대한 95% 신뢰구간	
	B	표준오차	베타			하한값	상한값
1 (상수)	-6.863E-04	.053		-.013	.990	-.105	.104
조세윤리(TE)	-.169	.079	-.165	-2.148	.033	-.325	-.014
자료은폐(OPEN)	.127	.056	.178	2.284	.024	.017	.237
소득수준(INC)	-.132	.078	-.133	-1.690	.093	-.287	.022

위의 <표 5>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귀모형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형의 유의도를 보면 F값이 0.001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세윤리의식,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의식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설명력(R제곱)은 10.7%로 나타났다. 조세윤리의식과 과세자료의 노출은 95% 신뢰수준에서, 소득수준은 90% 신뢰수준에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윤리의식이 낮을수록, 과세자료의 은폐가 용이할수록,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4.3. 가설검증

4.3.1. 조세윤리와 조세회피성향

조세윤리의식이 높은 납세자는 조세회피성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피어슨(Pearson)상관계수가 -0.220으로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결과 유의확률이 0.033로써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납세윤리의식에 따라 조세회피성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1은 채택된다.

이러한 결론은 선행연구인 김진황(1993), 이우윤(1996), 박원일(2000)등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것이다.

4.3.2 과세자료은폐가능성과 조세회피성향

과세자료의 은폐 또는 비노출이 용이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상관관계분석결과를 보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0.24(P=0.002)으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회귀분석결과도 유의확률이 0.024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는 채택된다. 이러한 결론은 박원일(2000)의 연구결과와 배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통구조의 전근대성과 무자료거래 등 소규모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투매와 같은 변칙거래로 세금계산서수수의 기피현상과 영세한 도·소매 업체에서 박리다매 형태로 인한 세금계산서 탈루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3 소득수준과 조세회피성향

고소득자일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상관관계분석결과 조세회피성향의 상관관계가 $-0.211(P=0.007)$ 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 결과 확률이 0.093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태영(1992), 유시영(1993), 박원일(2000)의 연구와는 일치되며 고소득자일수록 조세회피를 많이 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세금납부수준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4.3.4. 납세자특성과 조세회피성향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이 납세자의 특성(성실·불성실납세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보조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전적 기대는 이들 집단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성실·불성실이 미국과 같은 오랫동안의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집단간의 조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t 검정을 하였다.

1) 납세자 특성과 조세회피성향

성실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 측정치의 평균은 $-5.8E-02$ 이고, 불성실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 측정치의 평균은 0.2217로서 전체적으로 조세회피성향이 낮게 나타났으나, 두 집단간에는 아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록 불성실납세자로 인위적·조작적으로 집단이 분류되긴 했으나 불성실집단의 조세회피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으로서 가산세를 물거나 조세추징을 당한 집단의 경우 조세회피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박원일(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된다.

<표 8> 조세회피성향(TA)에 대한 차이 검정

TA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F	Prob>! !T!
불성실납세자	34	0.2217	0.7584	0.1301	2.076	0.000	0.040
성실납세자	130	$-5.8E-02$	0.6841	$6.023E-02$			

2) 납세자특성과 조세윤리

<표9>에서 성실납세자로 분류된 응답자의 평균은3.677E-02이고 불성실납세자의 평균은 -0.1406으로서 성실납세자집단이 불성실납세자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박원일(2000)의 연구결과와 배치된다. 이결과는 <표8>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두 집단사이에 조세윤리의식에 차이가 없음은 납세자 준거집단별로 추가조사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9> 조세윤리의식(TE)에 대한 차이검정

TE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F	Prob> T
불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	34 130	-0.1406 3.677E-02	0.5753 0.7352	9.867E-02 6.448E-02	-1.305	3.100	0.194

3) 납세자특성과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표 10>에 의하면 성실·불성실납세자 집단의 구분에 따른 과세자료은폐관련 응답결과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가산세를 물거나 조세추징을 당한 집단이 과세자료은폐 용이성에 대한 조세회피 의식이 납세자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자료의 은폐가능성을 줄여 모든 거래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10>

OPEN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F	Prob> !T!
불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	34 130	-0.2188 5.723E-02	0.9339 1.0122	0.1602 8.877E-02	-1.438	0.675	0.152

4) 납세자특성과 소득수준

<표 11>에 의하면 성실납세자 와 불성실납세자로 조작적으로 분류된 집단간에는 소득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집

단간에 고소득자의 조세회피의식이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11>

TE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F	Prob> T
불성실납세자 성실납세자	34 130	-1.8E-02 40622E-03	0.7735 4.622E-03	0.1326 0.6918	-0.163	0.004	0.871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조세회피성향에 대해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분석하고 이들 납세자집단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성향과 그 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선정된 조세회피 요인은 조세윤리, 과세자료의 은폐용이성, 소득수준 이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조세회피요인으로서 조세윤리의식, 과세자료의 은폐가능성 및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자들의 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납세자특성에 따라 조세윤리와 과세자료의 은폐가능성 및 소득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는 납세자들이 조세에 대한 인식과 납세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나 조세포탈(탈세)이 왜 문제이고 이에 대한 처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과 조세윤리와 조세에 대한 의식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과세자료의 은폐 내지 비노출의 용이성과 소득수준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추어볼 때 과세자료의 투명성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사업자들로 하여금 기장제도(회계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등 거래 자료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분위기가 정

착되어 저야한다. 실제로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조세공평성에 대한 의문,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감상실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우편이 아닌 직접방문 또는 인맥을 통해 실시한 결과 회수율은 높았으나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뢰성이 비교적 낮았다.

둘째, 과세당국에서 조세회피 실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자료에 대한 연구가 곤란하였다.

셋째, 세금관련 질문이란 점에서 자영업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응답에 편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실감 있는 연구를 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정확하고 다양하게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요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세청 「세무조사실무」(국세청1994), 「국세청통계연보」(국세청1999)
- 김진황(1993),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원일(2000),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유시영(1992), 조세회피 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말순(2001),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실증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우윤(1996), 납세자의 조세포탈성향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환(2000), 부가가치세 납세자 유형에 따른 조세회피 요인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호, 한국회계학회
- 전태영,(1990)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정환(1996),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8호, 한국세무학회.
- 조현연 · 이신남(2002),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8권, 한국회계정보학회.
- 최 광(1987),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최입수(1997),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Eistrand, L., Factors Affecting Compliance Focus Group and Survey Results, 1980 Proceedings of the 73rd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National Tax Association, November(1980).
- Jackson, B. R. and V. C. Milliron(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n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pp.125-165